

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 시도체육회장

(경유)

제목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알림

1. 귀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: 가. 시·도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32조의6(정당 등 표방 금지)
나. 시·군·구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32조의6(정당 등 표방 금지)
3. 위 규정과 관련,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관 시군구체육회에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정당 등 표방 금지 관련 사항 안내

○ 후보자가 선출직 공직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

-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(정당의 당원 경력 포함)하는 경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6(정당 등 표방 금지)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는 정당 등 표방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

※ (참고사항)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정당 표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에 의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. 끝.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

전결 12/08

★과장

안기표

부장

심상보

협조자

시행 지역체육부-4083 (2022-12-08)

접수 기획홍보부-1987 (2022.12.9.)

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 대한체육회)

/ <http://www.sports.or.kr>

전화 02-2144-8202 전송

/

/ 공개